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412
----------	-------

발의연월일 : 2025. 11. 19.

발 의 자 : 박해철 · 김남희 · 박 정
송옥주 · 이연희 · 박균택
한민수 · 전현희 · 김정호
추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걱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고객응대 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국가적 관심 및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조사 결과 및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도록 하여, 고객응대근

로자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41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포함한 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1조의2(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u>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u> <u>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포함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u>